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윌일	2020. 11. 16.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56호

제출연월일: 2020. 11. 16. 제 출 자: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우리시 주요 시책과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논산시 시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로 제명 변경
- 현행 '논산시정신문편집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논산시 시정신문 실무단' 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6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 미반영

- 개정안 제6조(실무단 구성·운영) 제2항을 '실무단의 기능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u>실무단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u>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개선 권고되었으나,

『논산시 시정신문 실무단』은 논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위촉직 위원 없음) 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 관련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미반영 함.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0. 15. ~ 2020. 11. 04.(21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공보관 (041-635-4930)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정 신문 조례 "를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논산 시정신문 "을 "논산시 시정신문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실무단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시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논산시 시정신문 실무단(이 하"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 ② 실무단의 기능·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논산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실무단"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를 "실무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열린홍보실장			유	재	락
안	언론홍보팀장			최	동	학
자	담	당	자	박 (74	미 6-51	희 5 6)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논산시정 신문 조례</u>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제2조(제호) <u>논산 시정신문</u> (이하"시	제2조(제호) <u>논산시 시정신문</u>		
정신문"이라 한다)의 제호는"논산			
시정"으로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시정신	제6조(실무단 구성 · 운영) ① 시장은		
문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시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내실을		
기 위하여 논산시 소속으로 논산	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위원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회"라 한다)를 둔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논산시 시정신		
	문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u>운영 할 수 있다.</u>		
<u>〈신 설〉</u>	② 실무단의 기능 · 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u>〈삭 제〉</u>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정신문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게재될 광고의 무료 여부			
4. 그 밖에 시정신문 발행에 필요			
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u>〈삭 제〉</u>		
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 원장은 친절행정국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신문발행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논산시 소 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대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 2. 품위 손상이나 장기간 출석하 지 않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된 경우.
-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삭 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 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언론홍보담당이 된 다.

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경우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① 시정신문에 게재할 제12조(자료)
자료는 <u>논산시</u> 산하기관 및 유관 ---- <u>시</u> -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 ----한다. ----.

② 접수된 자료는 제6조에 따른 <u>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합하다고</u> 인정할 때에는 시정신문에 게재한다. ③·④ (생 략)

제14조(광고의 게재) ① (생 략)

② 제6조에 따른 <u>위원회</u>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 게재할 수 있다.

<u>〈</u>삭 제〉

〈삭 제〉

세12소(사료) ①
<u>A</u>]
②
<u>실무단</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광고의 게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단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 2. 비용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열린홍보실장 유재락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